의안번호	제2890호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4. 12. 26.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890호

제출연월일: 2024. 12. 26.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가. 2025년 4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 또는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양질의 숙박을 제공하는 수련시설로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근거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제1항

나.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고성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나. 위탁대상: 고성군 유스호스텔

1) 위　　치: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35

2) 연 면 적: 7,199㎡(대지면적: 8,747㎡)

3) 사업규모: 4개동(지하 2층~지상9층), 46실

- A~C동: 지하2층, 지상 3층 / D동: 지하2층, 지상9층

4) 부대시설: 컨벤션홀(300명 규모), 중·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카페 등

5) 유스호스텔 위치도

다.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예정: 2025. 4.~2028. 3.)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마. 위탁사무의 범위: 유스호스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명시된 기능 수행

- 유스호스텔 시설 내외부 유지 관리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컨벤션홀, 카페테리아 등) 운영 전반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4. 추진일정

가. 2025.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나. 2025. 2.: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다. 2025. 3.: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계약 체결

라. 2025. 4.: 유스호스텔 개장 및 운영

붙임 1.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계획**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계획

❖ 효율성·전문성을 갖춘 단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절차 준비 및 시범 운영을 통한 차질 없는 개장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고성군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인구청년추진단-16321호, 2024. 10. 15.)

❑ 고성군 유스호스텔 시설현황

○ 위　　치: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35
○ 연 면 적: 7,199㎡(대지면적: 8,747㎡)
○ 사업규모: 4개동(지하 2층~지상9층), 46실
　- A~C동: 지하2층, 지상 3층 / D동: 지하2층, 지상9층
○ 부대시설: 컨벤션홀(300명 규모), 중·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카페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 청소년 관련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 위탁을 통한 효율적 시설 운영 도모

❑ 위탁개요

○ 위탁기간: 3년(유스호스텔 개장일<2025. 4월 예정> ~ 2028. 3.)

- 최초 위탁 이후 연장(갱신)* 또는 신규 위탁 추진

* 초기 운영능력 검증 이후 재위탁 확정 시 위탁기간 최대 5년으로 조정

○ 위탁사무의 범위: 유스호스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기능 수행
- 유스호스텔 시설 내외부 유지 관리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컨벤션홀, 카페테리아 등) 운영 전반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수탁자의 자격: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법인·단체

❑ 위탁조건

○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지침 준수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와 운영요원 선임

○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권리설정, 전매, 대여, 교환행위 금지. 단,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카페테리아 등 일부 부대시설에 대해 고성군의 승인을 득한 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위탁에 관한 조건은 수탁단체 선정 후 고성군수와 수탁단체 간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

❑ 위탁수수료 산정 및 부과

○ **위탁수수료 부과: 연간 금50,000천원**

- 신축 건물(집기·비품 포함)에 대한 위탁임을 감안한 위탁수수료 부과
-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직영 시 3.65억 원 적자, 위탁 운영 시 0.41억 원 흑자 운영**으로 나타남

※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구 분	직접 운영(원)	위탁 운영(원)	비고
운영비(수입-지출)	-365,068,000	41,168,000	백원 이하 절사
수 입	597,480,480	910,168,717	직영 객실가동율 32%, 위탁 객실가동율 53.8%
지출합계	962,549,101	868,999,912	
인건비	650,877,006	568,317,709	직영 18명, 위탁 16명
경비 등	311,672,095	300,682,203	

○ 수탁자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수수료 부과계획

- 모집 공고 후 단체의 참여가 없을 시 위탁수수료 미부과

공개모집 공고(1차)	⇨	재공고(2차)	⇨	재공고(3차)
위탁수수료 부과 (50,000천원)		수익 발생 시 수익배분 (고성군 6 : 수탁자 4)		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연간 수지 분석 후 수익금 전액 시설 재투자

❑ 수탁자 공개모집 개요

○ 추진일정(예정)

수탁자 모집 공고	⇨	수탁 제안서 접수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 2. 11.~ 2025. 2. 24.		2025. 2. 25.~ 2025. 2. 28.		2025. 3. 7. 까지		2025. 3. 18. (예정)		2025. 3월중

○ 공고기간: 2025. 2. 11. ~ 2. 24.(14일 간)

○ 신청자격: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제안접수: 2025. 2. 25. ~ 2. 28.

○ 재 공 고: 1개 단체(법인)의 단독 신청 시 모집 재공고

※ 재공고 시에도 1개 단체(법인)만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점수(정량+정성) 70점 이상 획득 시 수탁자로 선정

❑ 수탁자 선정계획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9조
- **구성인원: 7인 이상 10명 이내(위원장: 부군수** / 부위원장: 호선)
- 구성방법: 군수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1/2 이상 공무원 이외의 자로 구성)
- 임 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해산 시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2025. 3. 18.(화) 14:00 ※ 별도 계획 수립

- 신청 단체(법인)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방법: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 참고하여 평가

❑ 위·수탁 계약 체결

○ 체결시기: 2025. 3월 중

○ 계약체결: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공증절차 이행

❑ 향후 추진계획

○ 2024. 12.: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5. 1.: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25. 2.: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5. 3.: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계약 체결

○ 2025. 4.: 유스호스텔 개장 및 운영

붙임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 수익허가나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함. ▸ **숙박 및 MICE 산업 유치 등**과 관련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임. ▸ 직영 대비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및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 용이**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법,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되며,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 용이**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추가 전담인력(운영대표자, 청소년지도사 등) 채용으로 인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확보 부담**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2년 이상 지속근로)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 가중**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2년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므로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지침(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고성군 **스포츠 유입인구(전지훈련 등)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인근 시로 관련 인구 유출 ▸ **관련 인구의 지역 내 수용을 통한 유출을 방지**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 필요**

□ **검토결과: 적정**

○ 유스호스텔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시설의 직접 운영도 가능하나, 직접 운영 시 인력 증원 등에 따른 부담 증가 예상

○ 청소년 수련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제공을 위해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참고 **관계법령(발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

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개정 2022.12.27. 조2767>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